

(붙임)

NH NongHyup

50년을 넘어 다함께 미래로!

농축협 교육지원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2012. 5.)

회원종합지원부

- 목 차 -

I. 교육지원사업비 정의	2
II.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현황	2
III.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 시 주요 문제점 ..	4
IV.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9

<별첨>

1. 최근 교육지원사업비 관련 주요 지적사례
2. 교육지원사업비 항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I

교육지원사업비 정의

-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농업인조합원의 농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농·축협의 설립 목적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법 제57조제1항의 교육지원사업 등 비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농축협 등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의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상 기부금 또는 접대비가 아닌 비영리 고유목적사업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I

교육지원사업비 집행현황

1. 연도별 집행현황

- 2011년도 교육지원사업비는 총 9,980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였으며 '12년도 사업계획은 1조 1,515억으로 15.4% 증가 전망
- 농축협당 평균 금액은 8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75백만원 증가

□ 2011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반면, 교육지원 사업비 증가율(9.6%)은 높은 수준이며, 매년 지속 증가 추세임
특히, 생산성 관련 항목인 매출총이익 증가율(6.5%)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상 교육지원사업비는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집행이 원칙

- 2011년 영업이익 증가율 이내 집행한 농축협은 227개(19.7%)
- 2011년 매출총이익 증가율 이내 집행한 농축협은 206개(17.7%)

《연도별 농·축협 교육지원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 계획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매출총이익	83,237	6.8	91,723	10.2	97,648	6.5	108,908	11.5
영업이익	18,082	7.0	21,993	21.6	21,659	-1.5	21,618	-0.2
교육지원사업비	8,204	7.1	9,106	11.0	9,980	9.6	11,515	15.4
농축협당(백만원)	703		780		855		987	

2. 교육지원사업비 항목별 집행 현황

□ 2011년도 조합원 영농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6,835억원으로 전체의 68.5% 수준임

- 영농지도비 6,068억(60.8%), 환원사업비 767억원(7.7%)

□ 2011년도 조합원 실익지원비용(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복지지원비)은 8,562억원으로 전체의 85.8% 수준임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상 영농지도비는 교육지원사업비의 65%이상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나, 전체평균 60.8% 수준임

- 2011년도 65%이상 집행한 농·축협은 519개(44.5%)

《교육지원사업비 항목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A)		2011년(B)		대 비 (B-A)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환원사업비	607	7.4	667	7.3	767	7.7	100
영농지도비	4,962	60.5	5,555	61.0	6,068	60.8	513
영농자재지원비	2,730	33.3	2,760	30.3	3,034	30.4	274
생활지도비	333	4.1	364	4.0	395	4.0	31
교육비	279	3.4	328	3.6	385	3.9	57
보급선전비	566	6.9	591	6.5	620	6.2	29
조사연구비	17	0.2	14	0.2	19	0.2	5
복지지원비	1,440	17.6	1,586	17.4	1,727	17.3	141
합 계	8,204	100	9,106	100	9,980	100	874

Ⅲ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 시 주요 문제점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 지침 미준수

- 생산성과 연계한 영업이익 증가율 이내에서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 미흡
 - 2011년 영업이익 증가율내 집행 농축협 : 227개(19.7%)
- 영농지도비 65%이상, 영농자재지원비 40%이상 집행 미흡
 - 2011년도 예산집행 시 기준 충족 농축협 : 190개(16.3%)

2. 영농과 무관한 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

-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시 하나로마트 등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
- 교육지원사업비를 출자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현금 지급

※ 2011년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 지적사례

- 농협에서 복지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조합원에게 매년 일반생활용품 구입이 가능한 상품권('11년 82백만원) 지급
- 농협은 영농자재지원비를 영농자재구입권으로 집행하면서 출자금의 일정수준 미달 조합원은 출자금으로 납입정리
 - 또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영농자재구입권 중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출자금으로 납입정리
- 농협은 당해년도 이전 적자 보전으로 처리된 임의적립금인 사업준비금의 감소부문에 대한 보전명목으로 교육지원사업비를 집행하여 출자금 납입하는 형태의 현금지급으로 손금 불인정

3.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시 조합원별 차등 적용

- 교육지원사업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사업이용실적, 출자금액 등으로 차등 적용으로 전체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 결여
 - ⇒ 생산지도비, 영농자재지원비 등을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은 배당금 또는 사업이용 장려금 등으로 지급이 적절하다고 지적
-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조직장 등 여론주도층 위주로 예산편성 및 집행

※ 2011년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 지적사례

- 농협에서 해외연수, 건강검진, 간행물보급 등 지급대상을 내부 조직장에 한하여 집행
- ◇◇농협에서 생산지도비, 환원사업비 집행 시 조합원별 출자 및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비 목적 및 취지 위반으로 손금 불인정

4. 예산편성 및 집행근기 불명확

- 재해지원비 등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 시 산출근기를 명시하고 객관적 자료 또는 지원기준 없이 집행
 -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찬금 등 지원 시 지원기준 등 증빙불비
- ※ 2011년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 지적사례

- ○○농협에서 재해지원비 집행 시 이사 등 특정조합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피해내역 및 복구입증 등 객관적 자료와 지원기준 없이 단순히 위로차원에서 지급

⇒ 대상자에 대한 해당비용 회수 조치

- ○○○○농협에서 조합원자녀 학자금 지원 시 미지급 대상 조합원이 이의제기를 하자 미지급대상 조합원에게 학자금 비목에서 추가 지원하여 해당 비목의 목적 및 지원기준 위반으로 손금 불인정

5. 비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 수혜가 직접적인 교육지원사업비 지원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비를 집행
 - 비조합원인 고객에 대한 경조비, 영농자재지원비 등 지급, 농축산업과 관련없는 행정기관, 단체 등에 협찬비 등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은 부적절

※ 2011년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 지적사례

- □□농협에서 비조합원인 일반고객에게 경조사비 지급으로 손금 불인정
- △△농협에서 농업과 상관없는 행정기관(경찰서 등) 및 타 농협 등 행사 시 협찬비 지원과 지자체장 및 계통사무소장 취임 시 축하금품 지원 등에 대하여 손금 불인정
- ○○농협에서 해외연수 시 조합원이 아닌 우수 고객에 대한 경비를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한 부문은 손금 불인정

6. 조합장 명의로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 농축협 예산으로 경조사비 등 집행 시 농축협 명의 사용 및 농축협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또는 각 단체에 대한 찬조금·협찬금 등 지급 시 조합장 명의 사용

※ 2011년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 지적사례

- ○○○농협에서 예산으로 조합원, 외부기관·단체에 대하여 경조비를 지출하는 경우 조합장 사적 경조비와 구분하고 기타 사전 선거운동 오해방지 등을 위하여 농협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조합장 개인이름 사용

7. 판매비와관리비성·고정투자 예산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

- 일반 회의비 집행 및 업무추진비성 예산, 이용사업 관련 기계장치 구입 비용 등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여 조합원 지원실적으로 과대계상
- 영농과 무관한 조합원 생일축하금 또는 명절 선물비 등 업무추진비성, 선심성 예산을 법인세법 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로 환원사업비 등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
 - 전 조합원 대상으로 영농과 무관한 선심성 예산을 지원으로 상당수 비영농 조합원이 혜택을 받고, 실제 영농종사 조합원이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각종 민원제기

※ 2010년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 지적사례

- △△△농협에서 조합원 지원 및 공동이용 목적으로 농협 소유의 농기계 취득 시 고정투자 예산이 아닌 환원사업비로 집행
- ○○○농협에서 홍보활동비 등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농정활동 명목으로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 책정하고 조합장, 상임이사 등에 매월 일정금액을 직접 농정활동비로 지급
 - 농정활동비 명목의 월정액으로 편성은 불가하고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

8.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한 고액의 기념품 지출

- 행사에 따른 기념품 등 지급시 고가상품 특히 영농과 무관한 고가 TV 등 생활용품 지급사례 발생

※ 2011년 농식품부 등 외부기관 지적사례

-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고가상품, 거액상품권 지급 등으로 지적
 - '09년 00농협에서 전 조합원에게 1백만원 상당의 고가 TV 지원
 - '09년 00축협에서 전 조합원에게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용품 지원

9. 교육지원사업비 내 계정과목 사용 오류

- 농·축협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동일목적·동일용도 임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농·축협별 다르게 사용

※ 주요 오류사례

구 분	오류 편성	정당 계정
조합원 영농교육 여성단체 관련 교육	생산지도비 생활지도비	교육비 중 실무교육비
공동이용농기계 구입비	영농자재 지원비	환원사업비 중 숙원시설설치비
농업관련 원예지 발간비용	실무교육비	보급선전비 중 간행비
농업관련 도서구입	조사연구비	
조화대 및 조향세트 구입비	경조비	복지지원비 중 복지사업비
총회운영 비용(수당포함)	연찬회비	일반경비의 회의비
농업인안전공제 지원금액	영농지도비	복지지원비 중 복지사업비
계통출하, 우수출하 장려금	영농자재지원비	경제사업의 직접사업경비
대의원선거 비용	실무교육비	회의비, 광고비 등
영농회, 작목반 회의관련 비용	실무교육비	영농지도비 중 생산지도비
원로조합원 경로잔치	실무교육비	복지지원비 중 복지사업비
행사관련 비용	생산지도비	영농지도비 중 행사비
농·축협 소식지 발행 비용	협찬비	보급선전비 중 간행비
조합원, 임원 세미나 관련비용	특색사업지원비	연찬회비 또는 실무교육비
조합원 신년인사회 관련 비용	교육비	연찬회비
영농자재지원비에 생활용품 포함		생활용품 지원 불가

IV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특법 상 농·축협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 따라서 교육지원사업비는 농협법 및 정관 상 교육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지원대상, 금액 등 기준을 가급적 이사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이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집행

주요 유의사항

- 경영여건을 고려 적정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 영농지원비(항)는 65%이상, 영농자재지원비(목)는 40%이상 집행
- 영농과 무관한 상품권, 출자금·현금 지급 금지
- 전체 조합원을 위한 집행으로 형평성 제고
- 교육지원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 명시 철저
- 비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지원사업비 지원 금지
- 경조비·협찬금 등 지원 시 「농축협 명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교육지원사업비 지급 금지
- 항목별 적합한 교육지원사업비 집행으로 투명성 제고

1 | 경영여건을 고려 적정 교육지원사업비의 집행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편성 지침」상 2012년도 농·축협 별 영업이익 증가율 범위 내에서 집행
- 특히 생산성 관련 전년대비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농축협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있다 하더라도 선심성·행사성 비용, 외유성 해외 연수 자체 등으로 전년대비 총 교육지원사업비의 증액 지양

2 | 영농지도비(항)는 전체 교육지원사업비 65% 이상, 영농 자재지원비(목)는 40% 이상 집행 준수

- 최근 비료, 농약, 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영농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영농자재지원 등 조합원 영농과 직접 관련된 예산집행 극대화
- 영농지도비 내 행사비, 협찬비, 연찬회비는 자체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 집행의 최소화
 - 지자체 행사 등 협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찬비 위주로 편성 하고 농업·농촌과 관련없는 단순 협찬은 지양

3 | 영농과 무관한 상품권 또는 출자금·현금 지급 금지

- 농협법과 정관에 명시한 비수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닌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킴

- 반면, 교육지원사업비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집행하는 경우 사용용도 불명확으로 과세당국에서 농협법 등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추가부담 우려
- 현금 등을 받은 조합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되지 않는 조합원이라도 건당 50만원 초과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교육지원사업비는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의 지급은 불가

4	전체 조합원을 위한 집행으로 형평성제고
----------	------------------------------

- 집행 시 조합원별 사업이용실적, 출자금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교육지원사업비의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영농자재지원비, 간행물보급비 등 수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생산활동 등에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으로 전체 조합원 대상 또는 사업이용실적 유무 등 최소의 기준적용이 바람직함
 -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른 차등지급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조합원에 대한 사전배당 등 문제발생 우려

□ 지원대상을 대의원, 내부조직장 등을 중심으로 편성 및 집행은 일반 조합원의 실질 혜택감소 및 형평성 문제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실제 다수 조합원의 민원제기 사항임

최근 일반조합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불만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급적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편성·집행하여 일반조합원의 사업이용 및 참여 유도

5 교육지원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 명시 철저

- 예산편성 시 대략적인 내용만을 표시하여 예산편성 근거가 불명확함 따라서 관관비와 동일하게 세부편성 근거를 명시하고 명시된 근거에 의하여 예산집행 철저
- 경조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관내 행정기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경조사 등에는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하여 운용
- 특히, 선거예정 농·축협은 예산집행 시 반드시 해당비용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예산집행 시 적정 지급증빙 수취
- 일반 경비처럼 교육지원사업비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지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대상임

- 협찬비 등 법정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운 경우 공문서, 초대장, 내부기안 등을 집행근거로 삼고 대표자 명의의 영수증 수취
- 경조비의 경우 청첩장 등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가급적 계좌입금 또는 영수증 수취

6 비조합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지원사업비 지원 금지

- 영농자재지원, 경조비, 학자금지원 등 사업수행에 따른 수혜가 직접적인 부문은 조합원만을 또는 영농회 등 농·축협 자조조직, 농축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협찬비 등 집행 가능
- 특히, 비조합원인 우수고객, 농축산업과 관련없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조비, 협찬금 등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7 경조비·협찬비 등 지급 시 「농·축협 명의」 사용

□ 농·축협 예산으로 조합원 경조비 및 각종 단체의 찬조금·협찬금을 지급 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농축협 명의 사용 및 농축협 경비임을 명기함에 유의

□ 농협법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라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 대해 금전·물품의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18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개념을 벗어난 『기부행위』나 경조금·협찬금 지급 시 『조합장 명의』 사용 또는 조합장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 등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시 경조금·협찬금 등은 세부산출근거 등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동 금액 지급시에도 농축협 명의를 사용

※ 특히, 2012. 3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농협법에 따르면 농축협 예산으로 축의·부의금품 등 경조비 등 지급 시 농축협 명의로 하여야 하며, 농축협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조합장 직명 또는 성명 등 조합장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에 유의

8 고유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교육지원사업비 지급 금지

□ 총회개최 등 일반사업 관련 회의비 또는 업무추진 관련비용 등 판관비성 예산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 금지

○ 특히, 영농과 관련없는 명절 선물대금, 조합원 생일축하금 등의 업무추진비성 비용은 법인세법 상 농협법 등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불인정되어 법인세 등 추가부담 우려

□ 각 사업별 예산집행 시 항목별 편성기준에 부합하게 예산 집행

- 특히, 지급회의서 작성 시 지급대상, 산출근기, 지급목적 등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서 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지급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손금불인정 등에 유의

⇒ 기 편성예산은 사업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계정인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조정 등을 통하여 변경 조치

※ 교육지원사업비 항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 별첨2

- 별첨 1. 최근 교육지원사업비 관련 주요 지적사례 1부
2. 교육지원사업비 항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1부.

<별첨 1>

최근 교육지원사업비 관련 주요 지적사례

1. 외부기관 주요 지적사례 I

교육지원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상 교육지원사업비 중 영농지도비(항)는 65% 이상, 영농자재지원비(목)는 40%이상 편성 및 집행 기준 미준수
- '11년 중 편성지침 준수 농축협은 190개로 전체 16.3% 수준

영농자재지원비 부당 지급

- 자재교환권을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여 조합원 수취 확인 곤란
- 자재교환권으로 하나로마트에서 생활용품 구입
- 영농자재지원비를 출자금으로 납입 정리

재해지원비(복구지원비) 지원 부적정

- 객관적인 피해 입증자료 없이 현금으로 재해지원비 지급

각종 간행물 무상공급 대상을 일부에 한정

- 전·현직 임원, 대의원에게만 농민신문 무상 공급

경조비 부당 지급

- 경조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설정
- 지급 범위 및 금액에 대한 내부규정 없이 임원진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경조비 차별 지급

임원 해외선진지 견학 시 개인경비성 항목 부당 지급

- 항공비, 숙박비 이외의 개인경비 등 지급

2. 외부기관 주요 지적사례 Ⅱ

- 농업과 관련 없는 행정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및 단체, 계통 기관과 타 조합 등 행사 시 협찬비
- 조합원별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교육지원사업비 차등지급으로 배당 및 증여 문제
-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출자금 지원이 교육지원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문제
- 비조합원(여수신 고객, 계통사무소 임직원, 행정기관 단체장 등)에 대한 경조사비
-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 조합원에게 고가상품, 거액상품권 지급 등
- 지급회의서 내용이 교육지원사업비인지 불분명
 - 여수신 고객유치를 위한 농정활동비 등
- 기타 지급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지급목적 등이 불분명

3. 중앙회 감시 시 교육지원사업비 관련 지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건 수	267	236	192	-44
변상액	277	986	3,331	2,345

<별첨2>

교육지원사업비 항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

1. 환원사업비

□ 조합원의 영농 및 생활에 공동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는 영농회별 공동 이용, 농기계 지원, 숙원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처리함

구 분	내 용
숙원시설 설 치 비	· 영농회, 작목반, 축산계 등에 공동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숙원시설(집기류 포함)의 설치 지원
유통지원비	· 농축산물 유통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
특색사업 지 원 비	· 조합원 특색사업 생산자금 지원시 금리보전
재해지원비	· 재해극복을 위한 기자재 지원비, 재해시설 운영 보조비 및 재해복구 지원비

2. 영농지도비

□ 농업기술 향상,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행사비, 장려비, 표창비, 연찬회비 등을 처리함

구 분	내 용
생산지도비	· 영농회, 작목반, 축산계 등에 조합원의 영농 및 양축에 필요한 농기계 등 지원 ·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경작지도와 협동 조직 육성, 지역특산품 개발, 우수 농축산물 생산지도를 위한 협의회· 간담회· 평가회비
환경보전비	· 환경보존형 농축산업과 농촌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지원
행 사 비	· 농축산업, 농촌 및 농협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비, 모범농가 등 시상에 따른 예산
협 찬 비	· 협동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농축산업관련 단체에 대한 협찬비 · 기타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협찬에 따른 예산
연찬회비	· 영농·양축 및 생활개선 지도를 위한 연찬회비 ※ 사업추진성 연찬회 및 임직원 회의는 제외
영농자재지원비	· 비료, 농약 등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축산자재 포함) 지원
농업인실익 지원비	· 농업인 실익지원 보조지원 자금의 출하제비 보조, 상품화비용 보조 등 처리

3. 생활지도비

-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취미교실, 주부대학,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부녀회 활동 등 지원

4. 교육비

- 조합원에 대한 교육비, 외부인사 초청 교육비 및 외곽 영농교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구 분	내 용
실무교육비	· 조합원 관련 각종 교육비 (임직원에 대한 교육비는 판관비에 반영)
위탁교육비	· 조합원의 대외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외곽교육비	· 외부인사의 농축산업·농촌·농협에 대한 이해 증진

5. 보급선전비

- 영농과 생활개선, 농촌문화 및 농촌발전을 위한 홍보비, 보급기재의 구입, 제작수리비, 출판물 간행비용 등을 처리

구 분	내 용
시 청 각 자 재 비	· 조합원을 위한 시청각자재 구입, 제작 및 수리에 따른 예산
간 행 비	· 조합원을 위한 각종 간행물(홍보용·업무용·교육용·보고서 등) 발간에 따른 예산
홍보활동비	·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농축산업·농촌·조합에 대한 이해증진 및 조합발전을 위한 홍보활동비 (사업추진성 예산은 제외)
문화활동비	· 농축산업·농촌문화를 위한 비용
간 행 물 보 급 비	· 조합원에 대한 농민신문, 전원생활 등 간행물 보급비
광 고 비	· 농축산업·농협 종합이미지 광고비

6. 조사연구비

-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비, 연구비, 사례비, 국제섭외비, 분담금 등을 처리함

구 분	내 용
연구비	· 농축산업·농촌 및 농협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따른 예산
사례비	· 조사대상처 사례비

7. 복지지원비

-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제비, 경조금, 건강진단, 농작업상해공제료, 자녀학자금, 문화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처리함

구 분	내 용
경조비	· 조합원의 경조사에 동참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경조금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관내 행정기관 등과의 형평에 맞게 책정하되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은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
복지사업비	·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제비, 건강진단비,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가축공제공제료, 조합원자녀학자금, 장제용품, 법률구조상담 지원, 무의탁 농업인의 농어민 연금대납, 경로당 등 연료대 지원, 원로조합원 초상화 제작 등 복지지원비 (조합원에 대한 장제용품을 경조비와 혼용편성 금지)